

광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553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영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2. 11. 11.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7878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나.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8. 5. 29. 접수 제102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원고는 2015. 8. 1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대출예정금액 35,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29,750,000원, 보증기한 2020. 8. 20.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C는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C는 누나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8. 5. 29. 접수 제10246호로 2018. 5. 2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신용보증사건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중소기업은행은 2019. 6. 19. 원고에게 D의 원금연체로 인해 2019. 5. 21.경 보증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건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9. 11.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D의 대출 원리금 채무 14,172,27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2020. 7. 17. 기준 D과 C에 대하여 15,389,239원(= 대위변제금 14,172,270원 + 가지급금 366,634원 + 손해금 850,335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5. 29.경 또는 늦어도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2019. 6. 19.경 C의 처분행위 및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7. 2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사고를 처리한 때 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연체 발생 시점인 2018. 6.경에 피고에게 C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29. 또는 2019. 6. 19.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9. 2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의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고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취소원인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사고통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 이루어지고,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전후, F은행에게 네 차례 대출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② 그 외에도 G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E카드 대금을 연체하였다가 연체를 해제하는 등 자금 사정이 불안정했던 사실, ③ C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4개월 후 E카드 대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결국 2019. 9. 24. 12,064,985원 상당의 카드 대금채권이 대손상각 처리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D 및 C의 자금 사정은 이미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실제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D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 즉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원고가 2019. 6.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때에 비로소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나(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3. 16.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로 추정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래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부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H이 사망한 이후 C와 다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등기만을 C 앞으로 마친 것이며, 이후 C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서 2018. 5. 2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H, C, 피고 순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9호증)에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일자 매매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그 거래가액이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H 또한 등기부상 등기원인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제1심 제2회 기일에 C의 무자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C의 무자력 여부를 다투며 자백을 취소하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피고는 C의 누나로서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C가 이미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C는 이로써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인식하에 등기명의인에 불과한 C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845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책임재산에 속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 같은바,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7,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C와 남매지간으로서 C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을 또 다른 누나인 I에게 매도하였는바, 자신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가족들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아, 판사 김성흠, 판사 김효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여수시 J 대 53m²

2. 여수시 J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4.09m², 끝,

